

## 계명가족회사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계명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계명가족회사(이하 “가족회사”라 한다)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를 대상으로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가족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가족회사 협약에 관하여 산학협력단의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를 따른다.

② 산업체와 가족회사협약은 산학협력단에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단과대학, 사업단(센터), 연구소 등도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 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회사는 산학협력단과 산학공동연구, 기술이전, 현장실습, 교육멘토활동, 캡스톤디자인, 기술지도 및 자문, 대학의 시설 및 장비활용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를 말한다.
2. 산업체는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협력이 필요한 기타 기관, 단체 등을 말한다.
3. 등급제는 대학과 가족회사간의 교류활동실적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기업맞춤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말한다.
4. 후보군은 가족회사 협약신청서를 제출한 산업체를 말한다.

**제4조(가족회사 혜택)** 가족회사는 제12조의 규정된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받으며, 등급별 혜택은 따로 정한다.

1. 대학 주관 및 각종 산학협력 정보 제공
2. 교수진의 경영자문 및 기술지도 제공
3. 각종 정부지원사업 및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 우선 참여
4. 대학 보유 시설 및 공용장비 지원
5. 산학협력협의회를 통한 동종 및 이업종간 교류기회 제공
6. 산업체 재직자 대상 교육 지원
7. 계명가족회사 초청 행사 참여
8. 학기제 및 계절제, 장·단기 현장실습제 연수 인력지원
9. 계명아트센터 공연료 할인
10. 동산의료원 건강검진 및 장례식장 우대
11. 동산도서관 이용 서비스 제공
12. 대학 내 개설되는 외국어 강좌 수강료 감면
13. 통번역 서비스 및 비즈니스 컨설팅 제공
14. 기타 기업맞춤 서비스 제공

**제5조(업무)** 가족회사에 관한 주관부서는 산학협력단 기업지원실로 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회사 협약체결
2. 업종별 산학협력협의회 구성 및 운영

3. 산학협력에 관한 기술정보수집 및 활동
4. 산업체와 공동기술 개발
5. 학생의 산업체 현장실습
6. 인력·시설·설비의 공동활용
7. 교류활동 실적에 따른 가족회사 등급제 운영 및 유료화 실시
8. 가족회사 후보군 관리
9. 기타 가족회사간 산학협력 관련 제반 업무

**제6조(가입신청 및 승인)** ① 우리 대학교와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산업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산학협력단장에게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신규 가입신청 산업체는 후보군으로 관리를 하며, 총장은 대학의 발전목표와 일정 기간 동안의 산학교류 실적을 고려하여 가족회사 협약을 승인한다.

③ 후보군 등록 및 가족회사 협약 승인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실무사항)** 산학협력단장은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한 제반 실무사항을 산업체와 협의한다.

**제8조(제반경비)** 협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사항에 필요한 경비는 산학협력단과 산업체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협약당사자)** 가족회사의 협약당사자는 대표이사가 되고 대학의 협약당사자는 총장이 된다.

**제10조(협약서)** ① 협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협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② 협약내용은 산학공동연구, 기술이전, 현장실습, 교육멘토활동, 캡스톤디자인, 기술지도 및 자문, 대학의 시설 및 장비활용 등 상호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되, 협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발효하며 어느 한 기관에서 문서상으로 협정파기 의사를 6개월 전에 통보받지 않을 경우 협약서는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다만, 협약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산학협력협의회)** ① 산학협력단은 산업체와 산학협력활성화를 위하여 가족회사가 중심이 되고 관련 학과(전공), 교내외 연구소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산학협력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협의회에 회장, 부회장, 주관교수 각 1인을 둘 수 있다.

③ 산학협력협의회 회장은 가족회사 대표로 하며, 부회장과 주관교수는 산학협력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가족회사 등급제)** 대학과 가족회사간의 교류활동실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족회사 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 가족회사 등급을 따로 부여할 수 있다.

1. 최우수 가족회사: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참여(산학공동연구, 기술이전), 기업연계 학부교육 참여, 계약학과 참여, 우리 대학교 졸업생의 채용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우수 가족회사: 기술이전, 현장실습, 교육멘토활동, 재직자 교육, 디마시클리닉 참여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 활동 가족회사: 협의체(포럼, 협의회) 활동, 산학협력 행사 참여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계명가족회사협약서

(협약기업 (협약기업명) - 계명대학교

로고)

# 계명가족회사 협약서



(협약기업명)와 계명대학교 (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는 산학협력을 통한 양 기관의 발전과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계명대학교는 가족회사 임직원의 위탁 및 재교육, 기술·경영지도, 연구장비의 활용 등을 통하여 산업체의 애로기술해결과 신기술 개발 등에 적극 참여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협력한다.
2. 가족회사는 기술과 인력교류 및 인력양성 등의 사업에 대해 상호 교류 협력하며, 특히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과 연계되도록 최대한 협력한다.
3. 양 기관은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며, 그 구체적인 협력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차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4. 양 기관은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상호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에 공개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서면승인 하에 공개한다.
5. 어느 한 기관에서 문서상으로 협정 파기 의사를 6개월 전에 통보받지 않을 경우 이 협약서는 유효하며, 이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협약기업명)

(협약기업 대표자)

계명대학교

총장 신일희



# 계명대학교 - (협약기업명) (협약기업 로고) 계명가족회사 협약서

계명대학교와 (협약기업명) (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는 산학협력을 통한 양 기관의 발전과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계명대학교는 가족회사 임직원의 위탁 및 재교육, 기술·경영지도, 연구장비의 활용 등을 통하여 산업체의 애로기술해결과 신기술 개발 등에 적극 참여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협력한다.
2. 가족회사는 기술과 인력교류 및 인력양성 등의 사업에 대해 상호 교류 협력하며, 특히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과 연계되도록 최대한 협력한다.
3. 양 기관은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며, 그 구체적인 협력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차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4. 양 기관은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상호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에 공개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서면승인 하에 공개한다.
5. 어느 한 기관에서 문서상으로 협정 파기 의사를 6개월 전에 통보받지 않을 경우 이 협약서는 유효하며, 이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계명대학교

총장 신일희

(협약기업명)

(협약기업 대표자)